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4. 10 선고 2017가단15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고(선정 당사자) B

변론 종결 2018. 3. 20

판결선 고 2018. 4. 10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53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관하여  
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1. 8. 31. 접수 제1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
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나. 묘은 1981 . 8. 31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, 실효. 이하 '특별조치법'이라 한다)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5685호로 1966. 2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E은 1999. 5. 3. 사망하여,그의 처인 선정자 F과 그의 자녀인 선정자 G, 피고가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,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.

따라서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판단

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,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(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27966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진영현

별지